

보 고 사 항

□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 회기의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기타 일반안건

□ 제9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2001. 9. 10

(화순군의회 공고 제2001 - 7호)

< 공고내용 >

- 집회일시 : 2001. 9. 18 (화) 10:00
- 집회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 각종 의한 발의상황 보고

-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발의일자 : 2001. 9.
 - 발 의 자 :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3
 - 회 기 : 2001. 9. 18 ~ 9. 27 (10일간)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발의일자 : 2001. 9.
 - 발 의 자 :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3
 - 출석요구사항 : 별첨

□ 각종 의안 제출상황 보고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건
 - 발의일자: 2001. 7. 19
 - 발 의 자 : 화순군수
 - 제안이유

-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및 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명칭 운용 등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기구개편에 따라 분장된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획예산실장”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 (안 제3조)
- 총무과 소관업무중 “감사”관련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안 제3조)
-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중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총무과로 이관 (안 제3조)
- “종합민원처리과”를 “종합민원과”로 명칭 변경 (안 제3조)

- 관련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명칭 운용등 조직관리 지침 (전라남도 자치 12200-1157 2001. 6. 21)

※ 2001. 7. 19 총무위원회 심사회부

○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

- 발의일자 : 2001. 7. 19.
- 발 의 자 : 화순군수
- 제안이유

· 화순군청 민원실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의 설치와 읍면의 인증기를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 인증계기 및 인증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재정비 보완코자 함.

- 주요골자

-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 제4항에 인증계기 및 인증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첨1)에 규정한 요금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음 삽입하여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보완코자 함.

- 관련법령 및 근거

-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을위한 민원증명발급시스템 운용지침에 의함.

※ 2001. 7. 19 총무위원회 심사회부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

- 발의일자 : 2001. 7. 19.
- 발 의 자 : 화순군수

- 제안이유

- 조례부칙에서 200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였던 조례22조 제1항 4호와 제28조 제2항의 정비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관리규정이 상호 상충되어 운영하였던 내용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비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운용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별첨 조례안 참조

- 관련법령 및 근거

-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개정 표준안

※ 2001. 7. 19. 총무위원회 심사회부

○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건

- 발의일자 : 2001. 9. 10.

- 발 의 자 : 화순군수

- 제안이유

- 1999년도부터 각 학교 학업 성적관리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성적증명서 발급을 받을 때 성적이 학년 석차를 내지 않고 『성적평정환산제』로 변경됨에 따라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중“학업성적이 당해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 해당하는 고등학생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한자”를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중에서 각 학교장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으로 개정 (안 제12조 1항 1호)

- 조례중 “서약서(별지 제3조호 서식) 1동”은 삭제

- 관련법령 및 근거

- 1999년도 성적평정 환산제 변경에 따른 학교장 간의

※ 2001. 9. 11 총무위원회 심사회부

○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건

- 발의일자 : 2001. 9. 10.

- 발 의 자 : 화순군수

- 제안이유

- 군, 군면 민원실에서 발급처리하고 있는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를 부인된

원증명 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도록 하고 또한 전자문서 활성화와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를 정확히 하고자 화순군공인조례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별첨 조례안 참조

- 관련법령 및 근거

·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용 민원증명발급시스템 운영지침 (행자부)에 의함.

※ 2001. 9. 11. 총무위원회 심사회부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건

- 발의일자 : 2001. 9. 10.

- 발 의 자 : 화순군수

- 제안이유

·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2001. 7. 1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고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조항을 신설함.

※ 2001. 9. 11. 총무위원회 심사회부

○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건

- 발의일자 : 2001. 9. 10.

- 발 의 자 : 화순군수

- 제안이유

· 화순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규제된 내용이 완화되도록 수입증지 조례를 정비코자 함.

- 주요골자

· 화순군수입증지조에 제7조 4항의 직장급고등에 우선지정 내용을 삭제하고 제10조 제2항의 증지보유 사항을 완화토록 정비하였으며 제11조 제1항의 판매인의 명의 위치 변경시 신청시 제출 사항을 삭제하며 제14조의 판매인의 승계화 제15조의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사항을 삭제코자 함.

- 관련법령 및 근거

-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제5차회의 (2001. 7. 5)에서 심의 의결된 2001년도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함.

※ 2001. 9. 11. 총무위원회 심사회부

○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

- 발의일자 : 2001. 9. 13.

- 발 의 자 : 화순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예산편성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본 예 산	증 감	비 고
계	154,858,777	141,338,601	13,520,176	
일반회계	133,434,010	125,330,353	8,103,657	
특별회계	21,424,767	16,008,248	5,416,519	

·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별첨

※ 2001. 9. 14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01. 9. 14.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주문

-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2001. 9. 18 ~ 2001. 9. 27 (10일간)

· 구성인원 : 7명

- 제안이유

-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의 심사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어

- 주문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제안 함.